

第107回(定例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第 4 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0年 12月 11日(月) 10時07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議事日程

1. 2001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產 管理計劃 變更(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2001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產 管理計劃 變更(案)(鐘路區廳長 提出)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9面

(10時07分 開議)

○委員長 金福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10일간 계속되는 정례회 중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다루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항과 안건들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하는 목표를 향해 구정을 올바르게 추진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은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야말로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꽃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주역은 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시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무척이나 피로하고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하시어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진정으로 무보수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회상을 구축하는데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01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產 管理計劃 變更(案)(鐘路區廳長 提出)

(10時09分)

○委員長 金福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30분 서대문경찰서 간부들과 오찬간담회가 있으니 회의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董連浩 財務局長!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財務局長 董連浩 안녕하십니까? 財務局長 董

連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福同 委員長님과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재무건설위원님들께 정중한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의 배경을 보고드리자면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여 행정서비스 개선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각종 구정업무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구청사 제1별관 증축으로 현재의 구청사가 매우 노후, 협소하여 주민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음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서 제1별관 5층 옥상에 연면적 502.5㎡를 증축하여 필요한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3억 2,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창신3동청사 부지매입과 청사신축에 대한 보고입니다. '98년 11월 14일 제8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으나 2회계연도가 경과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신3동 청사건립은 재정경제부 소유의 대지를 매입하고 창신·창림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하여 신청사를 확보하는 계획으로서 창신동 23-837번지상의 대지 419.3㎡를 매입하고 지하2층과 지상2~3층의 연면적 1,641㎡를 확보하는데 13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끝으로 청운경로당 처분에 관련한 보고입니다. 현재의 청운경로당은 자하문터널 상단부의 고지대 외곽에 위치해서 접근이 불편하고 청운아파트 철거로 이용대상 노인이 급감한 실정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새로운 경로당을 확보함에 따라 청운동 4-20번지상의 대지 738.9㎡, 건물 270.2㎡의 현 경로당을 용도폐지하고 처분하는 계획으로서 매각 추정금액은 6억 1,06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

무조록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2001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産 管理計劃 變更(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福同 董連浩 財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蔣昭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0년 11월 29일자로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유는 2000년 11월 21일자 제106회 임시회에서 20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나 그 당시 반영하지 못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사항에 대하여 추가 신청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청내용은 취득이 전수로는 2건, 물건으로 3건, 처분이 1건 되겠습니다. 건물은 이 건물 옥상 제1별관 옥상에 청사를 증축코자 하는 내용과 창신3동 청사를 신축하는 내용 그 다음에 처분은 청운경로당을 처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별관 옥상 증축계획입니다. 위치는 본건물 5층 옥상이 되겠고 연면적은 152.2평입니다. 건축구조는 샌드위치 패널입니다마는 이것은 단열제가 첨가된 요즘 판넬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슬라브 처리하는 문제는 바닥면에 일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3억 2,400만원으로서 설계용역비, 구조안전진단비,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이 되겠고 증축공간 이용계획은 일부 사무실 조정을 하고 입찰실, 다목적 회의실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제1별관 현황입니다. 현재

는 대지가 2,623.78평이고 건평이 3,924평으로서 지하1층, 지상5층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제1별관의 가장 문제점인 소유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토지는 종로구 소유로 자치구와 자치구의 광역시 분할과정에서 소유권이 확정되었습니다마는 건물은 현재 미등재 상태로서 서울시와 우리 구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주장은 '88년 4월 30일 사용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교통국과 전산실이 사용하고 있는 3, 4, 5층은 서울시 소유로 등재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구 입장은 그 당시 청사부지가 우리 구청 청사부지인데 시의 필요에 의해서 빌려줬던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 구 소유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창신3동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신축장소는 현 동청사 부지가 있는 창신동 23-837 외 2필지가 되겠고 대지면적은 127평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땅이었습니다마는 용도폐지를 해서 재정경제부로 넘어갔습니다. 건평은 497.1평,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2년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사비는 13억 5,000만원으로서 공사비 4억원, 토지매입비 9억 5,000만원 해서 2001년도 예산에 11억 5,000만원이 잡혀있고 금년도 예산에 2억이 이미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창림아파트 조합과 연계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대지 소유는 구 소유로 두되 조합의 명의신탁하여 주고 동 대지상에 조합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지분을 배정받는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지분 배정비율을 조합원보다는 유리하게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조건부로 합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0일자로 구 15차 정책협의회에서 협의가 완료되었고 2000년 7월 12일자로 합의각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창림아파트 전체 건축계획은 지하2층, 지상19층으로서 6,675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창신3동 현재 청사 내용은 유인물로 같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운경로당 매각 내용입니다. 현재 위치는 청운동 4번지 20호 토지가 223.5평, 건물이 81.7평 옛

날 등록회원은 30명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이용하는 어르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매각사유는 인근에 청운아파트 인접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청운아파트가 철거 진행되어 있어 이용대상 주민이 격감되고 있으며 고지대에 있어서 노인분들의 접근이 곤란하고 이미 대체건물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전 예정건물입니다. 경로당을 이전해서 쓰는 대상건물입니다. 위치는 신교동 6-27번지 대지는 42.9평입니다마는 건물이 건평이 90.7평으로서 지하1층, 지상3층 다세대주택이 되겠습니다. '91년 준공된 사안이고 이 건물을 개보수 해서 경로당으로 이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보수 내용은 지하 2.6평은 샤워장, 화장실이 들어가고 지상1층부터 지상3층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기타 취미교실방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개보수 예산액은 이미 2001년 본예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1억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창신3동청사 신축은 창림·창신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연대하여 신축하는 사안으로서 '98년 11월 16일 제86회 임시회에서 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던 사안입니다마는 2년 시효만료로 재승인을 구하는 사안이며 청운경로당 매각은 이용회원이 격감해서 '99년 12월 7일 용도폐지를 검토하였던 사안입니다마는 대체시설 확보 후 처리하기로 하고 보류되었던 사안으로서 대체시설이 확보되었으므로 매각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李炯述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제1별관 5층에 152평을 증축하겠다는 그 얘기죠?

○財務局長 董連浩 바로 이 건물을 말씀드린 겁니다.

○李炯述委員 여기 옥상에 건폐율, 용적률 여기

에 오버되는 게 없습니까? 이 옥상에 152평 올렸을 때 법적으로 벗어난 규제같은 것은 없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건축법상에 규제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152평이 3억 2,400만원이면 평당 얼마 책정된 것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2,400만원의 범위 안에는 별도로 2,000만원의 구조안전진단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를 다 포함해서 약 213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을 하고

○**李炯述委員** 설계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설계비, 구조안전진단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구조 내용물은 어떤 것으로 하는데 이렇게 저렴합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조금 전에 우리 蔣昭秀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를 드릴 때 건축구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량조 조립식으로 판넬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건축공사들 하고는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李炯述委員** 현재 중축부분에 대해서 설계는 발주가 된 것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아직 발주가 안됐습니다.

○**李炯述委員**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보온관계 옥상에 지으면 잘못 들여놓으면 여름에는 엄청 덥지요. 보온단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줄입니다. 옥상이 굉장히 가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에 냉난방 보온단열 이러한 부분이 옥상 가건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건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보온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계할 당시에 충분한 고려를 해서 설계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니라 옥상에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미관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를 해서

○**財務局長 董連浩** 반영을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이것은 반영을 해서 특히 우리 종로구청 건물같은 것은 중심부에 있는 건물이고 옥상에다 더덕더덕 해가지고 남 보기에도 흉칙스러운 그런 것은 들어서서는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미관도 중시를 해야 되겠고

○**財務局長 董連浩** 좋은 지적사항으로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어느 부분을 보면 관공사가 거의 평당 400만원 넘게 많은 금액을 책정하고 어떤 부분을 보면 생각 외로 금액을 해서 지금 400만원 넘는 이러한 건물을 지어냈을 때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을 적정하게 쓰지 못했다. 한 200만원 절반 금액에도 충분히 그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공사의 건물은 금액이 과다 책정돼서 집행해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설계비, 안전진단비 모든 거 포함해 가지고 210만원대면 과연 이런 건물이 사용에 적절한 건물이 되겠느냐 그러한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부분에 공사금액이 아주 저렴하게 책정돼서 우리 사용하는 공무원들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되겠다고 보고 이 금액이 다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되는데 관공사에 책정된 과거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너무 적은 금액이고 여기에 아주 깊은 관심을 두고 공사를 잘 해서 외부에 미관부분이든지 실내에 근무하는 분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그러한 것도 충분히 감안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福同** 李炯述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李憲九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九委員** 李憲九委員입니다. 청운경로당 건에 대해서 몇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매각이유가 청운아파트가 이제 철거됨으로 인해서 이용 노인이 적어져서 매각하려고 하시는 거 이해

가 됩니다. 또 223평인데 매각대금도 6억 1,059만 8,000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여기에 6억씩이나 들어서 좋긴 좋아요. 위치 좋고 건물도 좋고 파는 건 좋은데 청운경로 당 살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겠지요?

○財務局長 董連浩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매각을 하더라도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이 되어 야지 지금 사전에 특정인한테 매각할 것을 전제로 해서 심의를 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李憲九委員 그러면 6억 1,000만원이라는 것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정해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매각대금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경쟁에 의해서 4억도 될 수 있고 3억도 될 수 있다는 거지요?

○財務局長 董連浩 예, 그러한 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李憲九委員 그 다음에 이전 예정건물 신교동 6-27은 어느 정도 매매예약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물주하고

○財務局長 董連浩 건물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李憲九委員 샀다는 얘깁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예.

○李憲九委員 이것을 매입을 했다는 얘깁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건물은 매입을 하고 그것은 개보수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보수를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李憲九委員 매입했을 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까?

○專門委員 蔣昭秀 필운, 신교동간 도로개설공사의 확대보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미 보상하면서 잔여지가 남으니 확대보상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매입한 것입니다.

○李憲九委員 확대보상에 의해서

○財務局長 董連浩 예.

○李憲九委員 본 위원은 이 지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잘 아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다세대주택 방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노인정으로 한다는 것이 적합지 않고 또 방마다 따로 쓰게 되

면 편이 갈라지고 이래서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교동 66번지 외 8필지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로 지금 매입 예정에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해줬죠. 여기 지금 건물주가 전중현씨라고 삼양그룹 회장입니다. 이 양반 집이 엄청나게 커요. 아주 저택입니다. 또 자기가 평생을 살기 위해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아주 또 좋습니다. 건물도 튼튼하고 그 분이 이 집을 매각하면서 올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됐는가 하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매입을 하더라도 이 건물을 철거를 하면 철거비용도 들어가게 되니까 이것을 청운지역의 경로당으로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구를 해봐라 법에 저촉이 된다, 어쩐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건물은 철거하지 말고 거기다 경로당을 만들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신교동 6-27을 필운, 신교동 도로 내면서 확대보상 해서 샀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앞으로 66번지 건물을 말이죠, 어린이 유아 또는 다른 용도로 써서 그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보존하도록 말이죠. 이렇게 좀 국장님이 관계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財務局長 董連浩 예, 알겠습니다.

○李憲九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李憲九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丁炳煥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우리 구청의 사무실 면적이 아주 협소한 것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본관5층에 판넬식으로 즉 말하자면 152평을 증축하는데 건물 구조안전상에 하자가 없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별도로 예산에 2,000만원의 구조안전진단비를 반영을 해서 별도의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우선에 구에서 우리 전문공무원들이 진단한 바에 의하면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더 확실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전문기관에 안전을 별도로 받으려고 용역비 2,000만원 확보를 계상해놨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건물구조상에 안전하다면 어차피 사무실이 좁으니까 옥상에 더 평수를 늘릴 만한 공간은 없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옥상에 증축이 가능한 공간은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번에 증축계획을 준비를 했습니다.

○**丁炳煥委員** 어쨌든 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리라고 믿고 건물안전진단을 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吳錦南 前 副議長님! 질의해 주십시오.

○**吳錦南委員** 吳錦南입니다. 제1별관 지금 현재 5층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 4, 5층도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 4층

○**財務局長 董連浩** 소유는 서울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吳錦南委員** 서울시에서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등재는 안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5층에다가 다시 판넬로 해서 짓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울시하고 종로구하고 건물에 대한 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 4층이 결정이 되고 나서 후에 증축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차후에 3, 4층과 5층과 1층을 어떻게 구별을 하실는지

○**財務局長 董連浩** 현재 1별관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 자체가 종로구청 소유로 되어 있고 또 3, 4, 5층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유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 구에서 지금 쓰

고 있고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서울시 소유로 될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분쟁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향후에 5층에다가 증축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분쟁은 소지가 더 악화되어 가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吳錦南委員** 언젠가는 우리 종로구 소유가 될 것이다?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게 우리 종로구 소유로 빨리 되도록 財務局長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吳錦南委員** 다음에는 창림아파트 내에 창신3동사무소 청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 자리에 9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재정부 땅에서 매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입을 해서 지금 창림아파트로 같이 합류하면서 4억이란 돈을 건축비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창신3동청사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물론 조건부 건립방식이라 했습니다만 좀더 유리한 조건, 쉽게 얘기하자면 좋은 위치에 우리 창신3동 동청사가 아니면 그 창림아파트를 짓는데 상당한 불합리한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림아파트 재건축조합에다가 우리 동청사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어떤 계약조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창신3동사무소가 위치한 부지는 창림, 창신아파트를 재건축 하는데 상당히 필수적인 그런 현장에 위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림, 창림아파트 재건축조합과 그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고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물론 창림, 창신아파트 재건축이라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이라는

관점도 있겠습니까만 그 현장에 우리 동사무소를 지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 구에서 가능하면 많은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적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착안을 해서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현재 건축비 투입하는 문제, 우리 동청사의 면적을 확보하는 문제, 동청사가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가 하는 문제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해서 현재의 조건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吳錦南委員 지금 현재 창신3동청사가 총 지하 2층에 89.6평으로 주차장하고 기계실하고 시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보면 우리 창신동청사 내의 주차장 부지로써는 몇 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8대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 일부는 기계실을 하구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단독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아닙니다. 건물의 일부분입니다.

○吳錦南委員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계단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쓰는 겁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일종의 공용면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吳錦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洪承台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承台委員 洪承台委員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기 전에 어떻게 정례회 때 이와 같은 조례(안)이 갑자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정질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감사도 해야 되는데 왜 많은 세월을 두고 갑자기 이 조례(안)을 올린 이유가 됩니까? 물론 바빠서 그랬겠지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 점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저희들이 잘못 대응했었던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를 올립니다. 사과를 올리는데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창신3동의 경우에는 현재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이미 승인이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유효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 정기회에 올려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돼서 올렸고 그 다음 구청사의 경우는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어 왔던 그런 문제라서 절차상으로는 조금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洪承台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 질의사항이라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종로구의 졸속적인 이러한 건축을 짓는 것보다도 미래지향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1기 때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부터 항상 주장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동 110번지 새마을 서울시지부가 갖고 있는 450평, 그러니까 50평만 더 추가하면 500평이 됩니다. 건폐율이 60%, 30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하에는 인사동 네거리 밑에까지 주차장을 포함하면 1,000평의 주차장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지하로 5층을 한다면 1층은 임대를 주고 2~4층만 해도 수천 대 주차장도 지을 수 있고 건축법상으로 재개발로 되어 있지만 20층 이상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1기 때부터 항상 제가 우리 종로구에 있는 서울시부지로서 이것을 매입을 꼭 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많은 토지와 많은 것이 있습니다. 동대문구청 같은 데는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동대문구청도 물론 잘 지었습니다만 의회도 좋은 건물이 있으면서도 또 지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기에 의회는 너무나 시 낭비고 국세낭비라고 타구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사실 의원들 책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3대만이라도 미래지향적으로 그 지역을 서울시에다 우리 종로구가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면 벌써 1기 때는 단체장이 아니고 임용제였지만 2대, 3대 때는 단체장을 선출했습니다.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성의가 있었으면 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억 시비를 얻어 가지고 새마을서울시지부가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종로구회관으로 해서 그 지역의 많은 서울시 노인분들께 식사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과거 제2기 때 100억인가 주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잘만 하면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억씩 해서 5년 분할로 100억을 갚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기 때 20억을 우리가 서울시 에다 주고 나머지 4년 동안은 서울시에서 보증을 받든지 뭘 받든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러한 건물을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면 이걸 절대로 우리 종로구는 이러한 건물이 필요합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보면 이런 정말로 미약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지향적으로 간부회의 때도 얘기를 하셔서 가지고 실천해야지 이거 다 쓰러지는 건물 5층에다 물론 급하니까 짓겠지만 이러한 것보다도 졸속적인 건축보다도 미래지향적으로 완성성있는 그러한 것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협소한 구청사나 의회청사가 우리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구청 청사뿐만 아니고 의회청사도 새로 지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청사, 의회청사를 새로 신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구청이 위치하고 있는 이 공간에 건물을 새로 짓는 방법도 있겠고 洪承台委員長님께서 제시한 인사동 10번지 새마을서울시지부 건물을 확보해서 신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안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洪承台委員**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1기

때 이걸 했으면 참 좋았어요. 현대나 롯데, 대우에서 이걸 무료로 지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임대를 해서 건축비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천이 못하고 또 우리가 동전환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구청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업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복지센터를 만드는 것도 좋고 동부여성센터도 좋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구청직원이나 모든 것이 업무의 기둥을 일단 세워 놓고 그 다음에 복지센터도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걸 뼈대를 만들어놓지 않고 선정적인 그런 건물만 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정력과 그러한 공직자들의 소비를 서울시에다가 로비를 해서 서울시는 당연히 인사동 110번지는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금싸라기 같은 땅이예요. 서울시도 필요 없어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의원 건물로 하려다 대법관 자리, 법원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전부 이리 옮겨왔습니다. 그러면 이 찬스에 서울시에서 20억을 쥐 가지고 새마을서울시부지가 사용하는 걸 이번에 옮깁니다. 이러한 찬스에 우리 종로구에서 이걸 꼭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걸 해야 됩니다. 財務局長님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국장님이 반영을 하세요. 이것이 아름다운 종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洪承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3分 會議中止)

(10時5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福同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서울特別市鐘路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委員長 金福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吳鍾錫 建設交通局長!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建設交通局長 吳鍾錫입니다. 존경하는 財務建設委員會 金福同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종로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은 첫째,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권고안으로 시달된 사항을 수용하고 둘째,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관련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개정조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조례제3조제6호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는 비현실적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둘째, 동조례 제8조제5항 “하역주차 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소형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는 “하역주차 구간에는 하역과

무관한 차의 주차를 금지한다”로 개정하여 그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신설되는 조항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다음의 두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가지 예외적인 경우는 첫째,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즉, 신설되는 조항은 방금 말씀드린 두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설치면제에 따른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감액기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둘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되어 있습니다.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당해 시설물의 주차소요대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부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면제되는 주차장 소요면적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액기준은 공영노외주차장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주차장은 1/2를 감액하고 기계식 주차기 철거시에는 2/5를 감액토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동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조례작성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

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福同 吳鍾錫 建設交通局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蔣昭秀 專門委員!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蔣昭秀 專門委員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0년 11월 29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29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른 사항과 현행 조례사항 중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을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요인별 개정 사항입니다. 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은 조례안 21조의2와 3 두 가지이고 규제개혁 권고사항에 따른 사항은 조례안 제3조와 8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개정의 요인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는 조례안 제23조의 포괄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자가 그 의무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설치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구체적 방법규정을 논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요지를 말씀드리면 법21조의2 용어의 정의에서는 이 사항이 전에는 시행규칙에 정하는 사항인데 조례로 새로이 설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용어의 정의규정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설치에 갈음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비용,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이런 개정요지가 되었고 제21조의3 요지는 설치비용의 산출방법,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산정방법, 토지가액평가방법, 건축비 산출방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에게 납부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 계산방법은 조례안에서는 복잡하지만 이것을 공식으로 요

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무상노외주차장 1면당 설치비용×주차대수 이렇게 곱하면 이 비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도 총 설치비용÷총 주차구획 수 하면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조례에서 길게 설명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세번째,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건축비는 한국은행 발표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정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 개정사항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주차거부금지 규정 중에서 여섯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이용제한시간 초과차량에 대해서 주차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영업자의 횡포적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8조 하역주차구간 내 제5항 하역주차구간에는 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 하는 이 규정을 하역주차구간에는 하역과 무관한 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그래서 금지를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주차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노상주차장이라고 하고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택지 내에 있는 일반주차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다음 기계식주차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련법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정의, 설치 및 무상사용권과 조례개정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9조1항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

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4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인근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령에서는 직선 300m, 도보 600m범위 내인데 조례에서는 직선 150m, 도보 200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은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여기서 아까 예외적인 두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6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호 규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납부비용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노상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9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및 감액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이 수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의 시달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00년 9월 23일자로 시달되었고 그 내용은 조례 제8조제5항 하역주차구간 금지차량 규정을 하역과 무관한 차의 주차를 금지한다고 개정했으면 하는 권고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시행규칙에 정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조례안 제8조제5항의 하역주차구간 금지차량 개정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사항입니다마는 하역주차구간에 하역과 무관한 차의 주차를 금지한다는 조례안 문구가 다소 추상적 표현으로서 승용차에서 손가방을 내리면서도 하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차할 경우에 화물하역장으로서의 설치 목적이 다소 퇴색될 그럴 소지가 있는 그런 규정

으로 사료가 됩니다.

○委員長 金福同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위원 있음)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조례 제8조제5항의 하역주차구간 금지차량 개정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역주차구간에는 하역과 무관한 차의 주차를 금지한다는 조례안 그 문구가 다소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 승용차에서 어떤 물건을 싣고 내릴 때도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내리면서 하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차할 경우 화물하역장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약간 수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역주차구간 주차금지차량 규정을 하역과 무관한 차의 주차를 금지한다고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吳錦南委員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8조5항이 개정안을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하역주차구간에서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용자동차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는 하역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완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으로 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이나 吳錦南委員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속할 때의 융통성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고려해서 문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 구에서 참고사항으로 관리하는 하역구간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청계로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도 이와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할 필요가 있는데 시 하역구간만 있기 때문에

시의 조례에 방금 개정안 내용대로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뒤서 단속에 약간의 융통성이라든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吳錦南委員 본 위원이 청계천을 매일 갑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가지고 짐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오늘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니까 전문위원이나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의 조례를 떠나서 구에 이관된 조례라고 할 것 같으면 수정하는 것도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조례내용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제한되는 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완화된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는 단속을 하면서 융통성있게 하면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吳錦南 前 副議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안전심사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4分 散會)

○出席委員 9人

金福同 安載弘 洪承台 李憲九
吳錦南 丁炳煥 朴鍾植 李炯述
吳弼根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財務局長 董連浩
建設交通局長 吳鍾錫